

자동차 통관 일반 원칙

❖ 이사물품 자동차의 인정요건

- 「자동차관리법」 제 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
- 이사자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전거주지에서 등록하여 3개월 이상 경과한 자동차 (아래 사용기간 계산 참조)
- 이사자(동반가족이 동일세대를 구성한 경우 포함) 가구당 1대의 자동차
- 이사자 등의 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당해 자동차가 국내 항구에 도착(입항일)

❖ 자동차 면세 요건

- 전제요건 : 이사물품 자동차의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
- 대상자동차 :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국산자동차

√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국산자동차 확인

- 우리나라에서 제조되어 수출된 국산자동차는 차대번호(VIN)가 "K"로 시작
- 해외에서 국내 브랜드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제조국이 우리나라가 아닌 경우 (차대번호가 "K"로 시작되지 않는 경우, 예 : 미국 앨라배마 공장에서 생산된 현대 소나타)는 외국산 자동차와 동일하게 세금부과 대상임

❖ 이사물품으로 인정되는 자동차의 사용기간

이사자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전거주지에서 등록하여 3개월 이상 경과한 자동차로서 그 등록일로부터 등록명의인의 입국 일까지를 기간으로 계산함 (다만, 자동차 선적일이 이사자 입국일보다 7일 이상 빠른 때에는 입국일이 아닌 선적일까지를 사용기간으로 계산)

Q1. 등록명의인이 먼저 입국하고 동반가족 중 일부가 해외에 잔류하는 경우는?

☞ 자동차를 계속 사용. 소유한 잔류가족의 입국일까지를 사용기간으로 계산

Q2.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리스(Lease)하여 사용하다 구입한 자동차는?

☞ 리스(Lease)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한 기간을 포함하여 3개월 이상 사용한 자동차 리스계약서 제출하여야 함)

Q3. 이사자와 제3자 공동명의 자동차의 이사물품 인정여부는?

☞ 수출을 위한 말소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, 특별히 위법한 정황이 없으면 이사물품 자동차로 인정



√ 이사차량 요건 불충족 또는 단기체류자가 반입하는 자동차는 어떻게 되나요?

☞ 이사물품신고 절차가 아닌 일반수입신고 절차에 따라 통관

☞ 국산 수출자동차에 대해서도 과세